

인권정보자료실
R1.27.2

1991년도
제2집

노동인권 보고서

노동인권회관 편

역사비평사

노동인권보고서

제1부 1991년 노동인권 상황 개관

1. 노동인권의 현주소
2. 노동자의 상태

제2부 노동인권 침해상황

- 제 1 장 정부에 의한 노동인권 탄압
- 제 2 장 사용자에 의한 노동인권 탄압
- 제 3 장 산업재해

제3부 보론

노동부·노동위원회에 대한 노동자의식 조사

제4부 부록

1. 20세기의 노예 - 선원노동자
2. 전근대적 노동조합 탄압의 전형 - 목산호텔
3. 각종 성명서와 참고자료
4. 『노동인권소식』 중 노동자 인권

노동인권보고서

1991
제2집

노동인권회관

인권정보자료실
R1.27.2

책을 내면서

작년 6월 『노동인권보고서』 1990년판을 처음으로 낸 이후, 올해는 제 2집인 『노동인권보고서』 1991년판을 내게 되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4 월중에 발간되었다. 1집을 낸 경험이 보탬이 되어 자료수집과 집필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1집을 만들 때는 처음 시작하는 작업이 주는 막막함과 자료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면, 2집에서는 어쨌든 1집보다 내용이 나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단순한 자료정리 수준에 머물지 않고 노동인권의 현황을 특징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질적으로 향상된 기획을 하고 내용을 꾸린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래서인지 『노동인권보고서』 2집을 세상에 내놓자니 그리 떨릴 수가 없다. 1집은 발간 자체만도 가치가 커기에 내용의 빈곤감은 이해받을 수 있으리라 믿고 마냥 기뻐했는데, 2집부터는 냉정한 평가가 쏟아질 듯해 자신도 없고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초조함도 적지 않다.

그래서 실무자들도 한층 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노동인권의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나름대로 공을 들여 기획한 「노동부, 노동위원회에 대한 노동자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뜻깊은 일이었다. 전문여론조사기관이 아닌 회관 차원에서 500부가 넘는 설문지를 배포, 발송하고 3분의 1 이상을 회수하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이 작업의 의미는 그동안 우리가 대강의 느낌으로만 감지하여 왔던 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됨으로써 노동부, 노동위원회의 편파성과 제도적 질

“1991년에도 노동자의 인권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오히려 대다수 노동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더욱 가중된 정부와 자본의 탄압 앞에 계속 움츠러드는 한 해를 보내야만 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일 더하기 운동과 물가에 훨씬 못미치는 임금인상(사실상의 임금동결)을 외치는 정책 속에서 정부는 또 한번 ‘자본가에겐 비약을 노동자에겐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책을 내면서 중에서

* 노동인권회관의 위치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 1동 135-75
전화: 858-5837~8, 팩스: 862-7383

곡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사회에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제3장 산업재해 편에서 단순히 산업재해의 실황만을 공개하는 수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직업병 인정 절차를 둘러싼 제도적 문제점을 그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는 것이다. 비록 깊이있게 점검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 산업재활구조의 문제를 개괄적으로나마 다루어본 것도 기획의도는 가치가 있었다고 본다.

공권력에 의한 노동인권 탄압과 사용자에 의한 노동인권 탄압에서는 갈수록 더 대담해지고 노골화되는 탄압의 실상과 대기업에 집중되었던 사찰행위, 박창수 위원장 죽음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단적으로 말해서 1991년에도 노동자의 인권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1990년도에 이어 더욱 가중된 정부와 자본의 탄압 앞에 계속 움츠러드는 한 해를 보내야만 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일 더하기 운동과 물가상승에 훨씬 못미치는 임금인상, 사실상의 임금동결을 외치는 정책 속에서, 정부는 또 한번 '자본가에겐 비약'을 '노동자에겐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운동은 갈수록 조직적 투쟁적인 면에서 위축되고 있다. 구속이나 해고 등 가장 직접적인 탄압은 줄어들지 않고, 경제위기조차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와 자본가의 공세가 하도 엄청나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식 속에서 큰 가치를 막각하고 있다. 잘 산다는 것, 좋은 세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경쟁력 또한, 이것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

허려 대다수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 만한 생활의 질이 더이상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아지면서 보편적인 복지를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좋은 세상을 논하는 것의 기본이다. 그런데 이 당연한 상식을 잊은 채 기업경쟁력 회복이 모든 선의 기준인 양 모두들 착각하고 사는 듯하다. 국가적 부가 팽창하는 것은 분명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하여, 그들의 희생을 통해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다.

『노동인권보고서』는 바로 인권의 기초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고발함으로써 사회를 보는 인간적 관점의 회복을 위하여 쓰여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이 계속적으로 발간되어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 대가 되었으면 더욱 좋겠다.

마지막으로 올해에도 출판을 위해 애써주신 유홍준 선생님과 항상 노동인권회관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동인권회관의 이사님들, 이번 작업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노동조합간부나 노동단체 관계자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1992년 4월

노동인권회관 대표간사 권인숙

노동인권 보고서

■ 책을 내면서 · 3

제1부 1991년 노동인권 상황 개관

1. 노동인권의 현주소	13
1) 1991년 노동운동 탄압의 특징	
2) 위협받는 생존권	
2. 노동자의 상태	17
1) 노동자의 생활	
2) 노동자의 조직운동	

제2부 노동인권 침해상황

제1장 정부에 의한 노동인권 탄압

1. 정부정책에 포위된 노동자의 권리	27
1) 임금인상 한자리 수 억제정책	
2) ILO 가입과 노동법 개악 기도	
3) 노동부 지침	
2. 공권력 투입, 박창수 위원장 의문사	39
1) 파업사업장에 대한 무차별적 경찰 투입	
2) 대기업 연대회의 침탈	
3) 박창수 위원장 의문사	
3. 구속당한 노동자 인권	53
1)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구속노동자 현황	

1991년도 제2집

2) 노사합의를 무시한 구속	
3) 구속노동자에 대한 실형 선고	
4. 노동운동 탄압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 청구	59
5. 노동자의 사상과 정치활동 탄압	64
1) 사무금융노련의 정치활동 탄압	
2) 노동자후보 이현희씨에 대한 해고	
3) 노동자 조직사건	

제2장 사용자에 의한 노동인권 탄압

1. 사용자 탄압의 특징	67
2. 감시 · 납치 · 폭행	69
1) 감시	
2) 규모와 수준이 커져만 가는 블랙리스트	
3) 대기업의 전대미문의 다양한 사찰방식	
4) 납치 · 폭행	
3. 노동조합 탄압	78
1) 노동조합 결성 방해	
2) 노동조합활동 방해	
3) 노동조합 왜해	
4.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90
1) 임금체불을 빌미로 한 노동조합 왜해 사태	
2) 하청 분산	
3) 부도	
4) 폐업	

노동인권 보고서

5. 노동자의 자살	96
1) 일방적 임금타결에 향의 분신한 이진희씨	
2) 일 더하기 운동 속에 죽어간 젊은 여공 권미경	
3) 노조원의 무더기 연행에 향의 분신	
6.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탄압	100
1) 반복되는 성폭행 사례들	
2) 여성 장기근속자에 대한 무더기 부서이동	
3) 임시직이나 시간제 여성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제3장 산업재해

1. 산업재해 실태	115
1) 1991년 산업재해의 현황	
2) 1991년 산업재해의 특징	
2. 직업병 인정을 둘러싼 제도적 폐해와 사용자의 부당 탄압	130
1) 검진기관 제도에서 오는 폐해	
2) 직업병 인정기준의 경직된 해석으로 인한 폐해	
3) 직업병 판정 지연에 의한 폐해	
4) 사용자의 부당한 횡포로 인한 폐해	
5) 기타	
3. 산업재해 추방운동에 대한 탄압	140
1) 삼성전관 노동자들의 대중투쟁	
2) 원진레이온 직업병 인정 투쟁	
4. 1991년에 발표된 각종 정책의 문제점	145
1) 직업병 인정기준의 개악 측면	

1991년도 제2집

2) 직업병 판정절차 간소화의 실상	
3) 작업환경 측정 결과의 왜곡 발표	
4) 산업보건종합센터 법인 설립 신청 반려 과정	
5) 기타	
5. 산업재활구조의 문제점	149
1) 각 시설의 규모와 운영방식	
2) 문제점	

제3부 보론

노동부, 노동위원회에 대한 노동자의식 조사

1. 조사 개요	157
1) 조사 목적	
2) 조사 방법	
2. 조사 결과	158
1) 노동부에 대한 노동자의 의식	
2) 노동위원회에 대한 노동자의 의식	
3. 요약	174

제4부 부록

1. 20세기의 노예—선원노동자	177
2. 전근대적 노동조합 탄압의 전형—목산호텔	185
3. 각종 성명서와 참고자료	188
4. 『노동인권소식』 중 노동자 인권	219

제1부

1991년 노동인권 상황 개관

1. 노동인권의 현주소
2. 노동자의 상태

1991년 노동인권상황 개관

1. 노동인권의 현주소

1991년에도 노동자의 인권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오히려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1990년에 이어 더욱 가중된 정부와 자본의 탄압 앞에 계속 움츠러드는 한 해를 보내야만 했다.

물가는 1991년에도 9.5%나 상승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압박하였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는 요란한 '경제위기 노동자책임론'에 호도되어 침묵을 강요받았다. 파업사업장에 대한 보다 공격적이고 빈번한 공권력 투입, 노조간부 구속, 수배라는 물리적 탄압 앞에 노동조합의 일상활동과 단체행동은 봉쇄되었고, 각종 노동부 지침과 노동법 개악 기도 등으로 노동자의 기본권리는 위축되어 갔다. 이에 편승하여 사용자의 노동조합 탄압도 공공연히 자행되어 노동자에 대한 전근대적인 폭력과 감시가 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정적인 고용도 계속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1) 1991년 노동운동 탄압의 특징

정부와 자본의 노동운동 탄압은 노동자의 경제적 고통을 강요하고, 노

동 3권의 존재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제 노동자들에게 탄압은 일상적인 생활의 한 부분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1년 탄압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첫째, 자본의 편에 선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이 보다 공공연해졌으며 공격적인 양상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노·사·자율의 근본원칙은 정부의 노동통제의 필요에 따라 철저히 무시되었다. 1991년 초부터 정부는 상반기 임금투쟁을 앞두고 기선제압을 위해 대기업 연대회의 간부들을 연행·구속하여 분규를 촉발시켰으며, 동서식품에서는 교섭장에까지 경찰을 투입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노사 합의를 통해 분규가 해결된 기아자동차·대우조선에서는 노사 합의를 짓밟고 조합간부를 구속·수배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노동통제 방침에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노사 합의사항까지도 무시하면서 노동조합을 침탈하는 위법적인 공격성을 보여준 한 해였다.

둘째, 1989년 이후 계속된 탄압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된 것을 기화로 정부측은 법과 제도의 개악을 통해 노동통제를 강화하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노동부 지침은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강요되었고, 경영·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라는 지침을 개별 사업장에 강요하여 노사 간의 대립을 증폭시켜 왔다.

정부측의 탄압은 하반기에 들어서는 총액임금제 도입 등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면화되었다. 이 노동법 개악 시도가 노동자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여 좌절되자 노동부는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총액임금제, 시간제 근로의 도입을 관철하겠다는 집요함을 보이고 있다. 개악의 지만으로 불타고 있음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면서 그 기구의 기본조약인 '단결의 자유' 보장 등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한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결정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셋째,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적인 탄압행위가 정부의 탄압형태와 마찬가지로 공공연해졌다는 점이다. 1991년도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감시체계가 전국 도처에서 폭로된 한 해였다. 부산 신발업체에서 발견된 사상최대의 노동자 블랙리스트, 대기업에서의 항상적이고 조

직적인 노동조합 감시체계는 경악할 만한 것이었다.

또 노동운동 탄압 분위기에 편승하여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폭력행위, 노동조합 해산 강요 등이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이러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부나 경찰은 대부분 방관하였고, 이러한 비호 행위는 더욱 빈번한 노동인권 침해를 불러왔다.

넷째,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를 벼랑으로 몰아갔다는 점이다. 1989년 (주)전화에서 처음 제기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1991년 현재 17건으로 늘어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전세보증금, 퇴직금, 임금마저 압류하여 노동자의 생존권 박탈을 무기로 노동자와 조합을 굴복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부의 적극 권장하에 조합 핵심간부의 조합활동 포기와 조합의 단체행동권 봉쇄라는 효과를 노리면서 진행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해당 조합원의 연대보증인에게까지 청구되어 노동자 개인의 사회생활마저 파탄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탄압은 노사 간의 자율적 교섭을 저해하고 대립을 더욱 깊게 하였다. 또 정부정책에 대한 노동자의 불신이 높아가는 가운데 노동 3권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 권리가 더더욱 후퇴하고 있다.

2) 위협받는 생존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산업재해의 위험 앞에 방치되어 있다. 「1991년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에 의하면 상반기 동안 총재해자 수가 62,324명으로 하루 평균 415명의 재해자가 생기고, 이 중 7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중대 재해가 두드러지게 늘어났으며, 광산 노동자의 경우는 1년에 100명 중 5~6명이 산업재해를 입는 참혹한 현실에 처해 있다.

또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노동부와 사용자의

인명경시 앞에 불치의 이황화탄소 중독에 걸린 노동자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세상을 원망하며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아 가면서까지 노동할 수밖에 없는 노동현실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1991년에도 고용불안은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요한 문제였다. 중소 제조업체의 휴·폐업이 급증하면서 임금체불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늘어났다. 이 휴·폐업은 신발, 섬유, 피혁, 전자부품 업종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났다. 또 업종전환과 공장자동화, 공장이전 등으로 인해 감원과 집단해고에 내몰리는 노동자도 전국 도처에서 생겨났다.

그러나 고용불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인사·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는 지침이 보여주는 것처럼 노동자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1991년은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함께 제조업체의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던 한 해였다. 노동부가 발표한 「제조업체 근로자 의식구조 조사」 결과¹⁾에서 노동자 10명 중에 3명 이상이 다른 생계수단이 없어 마지못해 일을 하고 있으며, 전직이유에 대해서도 임금에 대한 불만이 29.8%, 승진기회 불만 15.2%, 복지시설 미비 14.1%로 나타났다. 이것은 제조업 노동자 인력부족의 주요한 원인이 열악한 작업 환경과 임금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생산직 인력난에 대한 정부 정책은, 값싼 해외노동력 수입 추진과 외국인 취업 확대, 병역특례업체 확대와 특례 보충역 인원을 늘리는 방침에서 보여지듯이 임금이싼 노동자를 확대 공급하는 것으로 일관되었다. 게다가 '5대 더하기 운동' 등 일 더하기 운동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경제위기와 인력난이 "게으르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노동자"들의 책임인 양 호도하는 가운데 부산의 어린 여성 노동자가 자살하는 참극을 불러오기까지 했다.

끝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선원노동자의 참상이 폭로되면서 큰 충격을 주었다. "몇 년만 고생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부푼 꿈

1) 1991년 8월에 방문조사

을 안고 원양어선을 탄 선원들은 망망대해에서 휴일도, 명절도 없이 하루 18시간 이상 계속되는 중노동과 상상을 초월하는 선상폭력 앞에 정신과 육체가 파괴되는 고통을 겪었다.

이 같은 인권의 사각지대인 선상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선원의 수가 1990년에 422명, 1991년 8월까지 151명에 달해²⁾ 선원노동자의 총수가 2만 명인 것에 비추어볼 때 얼마나 참혹한 상황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다 사망 선원의 반수 이상이 '의문의 죽음'으로 남아 있어,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2. 노동자의 상태

1) 노동자의 생활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91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5%를 기록했다. 그러나 노동자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2년에도 높은 물가상승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1991년도 전국 평균 임금인상률은 10.5%로 집계되었다.

〈표 1〉 임금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1988년			1991년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전체	14.6	38.7	46.7	16.1	35.1	48.8
생산직 (운수·단순노무 포함)	9.7	35.8	54.6	13.4	33.2	53.4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1

2) 해양 경찰청 집계 자료

〈표 2〉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단위 : 원)

	단신남자	단신여자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90년 최저생계비	337,730	332,190	529,042	670,251	875,464	1,141,731
91년 최저생계비	425,836	426,722	683,814	862,100	1,113,862	1,459,100
생계비 상승률(%)	26.1	33.4	29.3	28.6	27.2	27.8

자료 : 한국노총, 1991년 12월 10일 기준

〈표 3〉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 최저생계비

(단위 : 원)

	단신남자	단신여자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90년 최저생계비	356,054	335,979	586,194	693,901	909,238
91년 최저생계비	450,310	424,950	761,077	895,994	1,162,620
생계비 상승률(%)	26.5	26.5	29.8	29.1	27.9

자료 : 전노협, 1991년 11월 22일 기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임금에 대해 노동자들은 극히 일부만이 만족하고 있다. 16.1%의 노동자만이 자신의 임금에 만족을 표시했고, 생산직 노동자 53.4%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1991년 임금인상과 생활수준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의 61.7%가 “1991년 임금인상 결과, 생활수준이 그다지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물가상승 때문에 오히려 악화될 것 같다”는 응답도 30.3%에 이르렀다.³⁾

1991년 한 해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을 쫓아가기에 바빴으며,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키기보다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결론이다.

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의 최저생계비 상승률을 살펴보아도 드러난다. 1990년에 비해

3) 전노협, 「제조업 노동자 설문조사」

〈표 4〉 1991, 1992년 법정최저임금액

(단위 : 원)

	시급	일급	월급
1991년	820	6,560	
1992년	925	7,400	209,050

자료 : 노동부

〈표 5〉 노동시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1988년			1991년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전산업	16.9	41.5	41.6	20.9	42.8	36.3
생산직 (운수·단순노무 포함)	11.2	40.3	48.6	15.4	44.8	39.8

자료 : 통계청,『한국의 사회지표』1991

1991년도의 최저생계비 상승률은 평균 약 30%에 달하고 있다.

한편, 아직도 상당수의 노동자가 기아임금에 허덕이고 있다. 노동부가 고시한 1992년도 법정 최저임금액은 월급으로 20만 9050원이며,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8.5%가 법정 최저임금제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원을 갖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은 생계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연장·야간근로, 휴일특근, 연·월차 휴가 미사용을 강요받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1991년 10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법정 노동시간이 주 44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제조업 노동자의 경우도 1986년의 주당 평균 54.7시간을 고비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왔다. 1991년 6월 기준으로 전산업, 전직종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47.4시간이었고, 제조업 생산직은 48.8시간으로 소폭이나마 점차로 감소하고 있다.

〈표 6〉 1988년도 연·월차 휴가 이용현황

	전체평균	실제이용자평균	이용비율(%)
생산직 이용일수	2.9일	7.3일	39.7
사무직 이용일수	3.1일	7.0일	44.0

- 주 : 1) 이용일수(전체평균)=연·월차 총사용일수÷조사대상 총근로자수
 2) 이용일수(실제이용자평균)=연·월차 사용일수÷하루라도 이용한 근로자수
 3) 이용비율=하루라도 이용한 근로자수÷조사대상 총근로자수×100

자료 : 최영기, 「근로시간의 실태와 정책과제」, 1991

〈표 7〉 조합원수 및 단위노조수

	1987. 6.	1987. 12.	1988. 12.	1989. 12.	1990. 12.
단위노조수(개)	2,742	4,103	6,164	7,883	7,698
단위노조증감률(%)	2.5	49.6	50.2	27.9	-2.35
조합원수(명)	1,050,201	1,267,457	1,707,456	1,932,415	1,886,884
조합원수증감률(%)	1.4	20.7	34.7	13.2	-2.36
조직률(%)	14.7	17.3	22.0	23.4	21.7

주 : 증감률은 전년 대비임, 1987. 6는 1986년말 대비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그렇지만, 아직도 월 초과노동시간이 33시간에 이르고 있으며, 30인 이하의 소기업의 근로시간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고 있다.⁴⁾

〈표 5〉에서 보는 것 같이 노동시간에 대한 불만이 36.3%에 이르고(생산직의 경우 39.8%)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에게 휴식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전히 높은 노동시간과 함께 연·월차 휴가 사용실태에서도 알 수 있다. 〈표 6〉에서 보면 생산직 노동자의 전체평균 연·월차 휴가 이용일수는 2.9일에 불과하고, 생산직 노동자의 61.3%는 단 하루도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4)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91, 3/4



▲ 11월 10일 1991 전국노동자대회 광경

있다.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73.6%가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자들은 생계비 부족 분을 메우기 위해 휴가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휴일수가 외국에 비해 많다는 이유를 들어 1991년도부터 법정공휴일 이틀을 축소하기까지 했다.

열악한 주거상태도 노동자의 생활상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한국노총이 1990년 11월~12월에 걸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시지역 근로자의 67.5%가 남의 집에 전·월세 생활을 하고 있으며, 평균 254만 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서도 도시근로자기구의 57.3%가 전·월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생산직 육체노동자의 경우는 66%가 자기 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1991년에는 1990년 집값 폭등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고는 하나 전·월세 가격은 상승을 계속해 노동자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통계

5) 『조선일보』 1991년 3월 29일자

〈표 8〉 사업체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화 비중

(1990. 12월 말 기준, 단위 : %)

	10~29	30~99	100~299	300~499	500인 이상	전규모	중소규모	대규모
조직화비중	1.4	11.1	40.8	54.2	81.7	6.0	4.9	68.5

주 : 1) 이 수치는 노조 유무별 사업체 빈도수로서 조합원수로 평균된 조직률과 다름

2) 중소규모 사업체는 10~299인 기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청의 도시별 주요 상품 물가지수에서 1990년 전세 평균이 135.0(1985년 100기준)에서 1991년 10월에는 154.4를 기록해 전세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⁶⁾

또 소득이 낮은 근로자 가구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근로자 가구에 비해 2배가 넘는 조세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노동자에게 안겨주었다. 1989년도 도시가계 연보를 토대로 도시근로자의 가계경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조세부담액은 2만 4,500원으로 비근로자 가구(1만 500원)에 비해 2.3배가 많고, 조세부담액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근로자 가구는 3.9%로 비근로자 가구(1.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배 차원의 모순점을 드러냈다.

2) 노동자의 조직운동

1990년 말을 기준으로 한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1987년 이후 대폭적으로 증가하던 조합원수와 단위노동조합수는 1990년에 미약하나마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조합과 조합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기보다는 정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체 내지 미소한 감소현상은 정부와 자본의 강도높은 노동조합 탄압이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6)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10월

그러나 〈표 8〉에서 보듯이 현재의 기업별 노동조합체계에서 조직될 수 있는 노동자가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고도 볼 수 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68.5%가 조직되어 있고, 특히 500인 이상의 사업체는 81.7%가 조직되어 있는 현황이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가 극복되지 않고서 300인 미만(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조직운동의 측면에서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화를 요구 받는 상황이 노동운동 주체들에게 제기되고 있다.

1991년 노동조합운동은 한국노총, 전노협, 전국업종회의, 대기업 연대회의라는 조직구심을 갖고 진행되었다.

한국노총은 지방의회 선거에 100여 명의 노동조합 출신 후보를 입후보시키는 등 정치활동에 의욕을 보인 한 해였으며, 정부의 노동법 개악 기도에 대해 단호한 반대입장을 보여주었다.

전노협은 계속되는 탄압 속에서도 민주노동조합운동의 구심으로서 활동을 지속해 왔다. 공안정국과 박창수 위원장 의문사에 대한 5·6월 투쟁과 하반기의 노동법 개정투쟁을 수행해 온 것이다.

전국업종회의는 각 연맹의 합법성 쟁취를 위한 활동과 참교육, 의료민주화, 연구자율성 쟁취 등 사회민주화를 향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대기업 연대회의는 정부의 집중된 탄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1991년 한 해 동안 소속조합원이 모두 121명이나 구속되었고, 계속되는 정부의 탄압으로 조직이 와해되는 한 해를 보내야 했다.

또 1991년 한 해 동안 노동자의 조직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은 노동자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던 우리나라가 남북한 동시 UN가입으로 ILO에 자동가입하게 되면서 전국 노동자들이 단결의 자유를 요구하며 노동법 개정투쟁을 새롭게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노협과 업종회의, 노동단체가 공동으로 'ILO 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5만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조직하는 등 민주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표 9〉 연도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 : 건)

연 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총 발생 건수	276	3,749	1,873	1,616	322	234
쟁의발생신고			3,256	3,190	1,777	1,720

자료 : 노동부

단결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탄압은 많은 노동자의 구속과 함께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위축시켰다. 198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노사분규 건수는 〈표 9〉에서 보는 것같이 1991년에도 전년에 비해 27.3%가 줄어들었다. 특히 노사분규 건수 234건은 1986년 276건에 비해서도 낮아진 것이었다.

파업 사업장의 규모별로 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율이 1988년 24%에서 1989년 24.8%, 1990년 34.8%, 1991년 47.4%(234 건 중 111건)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운수업이 전년(13.2%)보다 17.9%(41건)로 증가한 것이 특징인데 주로 택시노동조합의 지역연대파업이 두드러졌던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사분규 감소추세를 두고, 노동부는 “1990년 이후 안정적 조정국면에 진입한 노사관계는 1991년 들어 노사협력의 새로운 바탕을 형성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⁷⁾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노사협력 아래서 가능했다고 보기보다는 정부와 자본의 노동운동 탄압, 특히 파업을 봉쇄하기 위한 물리적, 제도적 탄압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제2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제2부

노동인권 침해상황

제1장 정부에 의한 노동인권 탄압

제2장 사용자에 의한 노동인권 탄압

제3장 산업재해

7) 노동부, 91년도 노사관계 결산

제 1 장

정부에 의한 노동인권 탄압

1. 정부정책에 포위된 노동자의 권리

1991년도의 노동정책은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통제로 일관해 왔다. 지난 1989년 이후 계속되어온 노동통제정책의 기조는 1991년에 더욱 강력하고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어 유지되었다.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론'을 내세운 정부의 노동통제정책은 임금인상 한자리 수 억제를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지난 1987년 이후 노동생산성을 크게 옮도는 높은 임금 상승과 산업경쟁력 약화로 작년부터 물가가 불안해지고 국제수지도 적자로 반전되었다"는 최각규 부총리의 발언에서 보이듯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독점재벌의 부동산 투기 등에서 비롯된 문제를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정부의 생각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기조하에 정부는 노동자들이 물가불안의 최대 고충자임에도 불구하고 물가불안의 책임자로 매도하였다.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론과 함께 정부의 노동정책은 저임금 유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저항을 봉쇄하는 데로 초점이 모아졌다.

노동법을 개악해서라도 노동자의 임금을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총액임금제 도입, 시간제 근로의 관철 의지로 드러났

다. 또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부당징계, 일방적 감원과 휴·폐업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경영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는 노동자들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은 “인사·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만일 노사가 경영·인사사항을 단체협상으로 타결할 경우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여 전횡적인 사용자의 권한만을 보장하기에 급급했다. 게다가 1991년도에 노동부에 의해서 적극 권장된 지침의 하나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반노동자적 정부정책의 성격은 전국경제인연합, 무역협회, 생산본부 등 5개 경제단체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6.4%가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기업가 편향”이라고 응답하고, 단지 5.4%만이 중립적이라고 대답한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 편향의 정부정책은 공권력에 의해 뒷받침되어 노동자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결론적으로 1991년 한 해는 노동통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포위된 채 노동자의 권리가 묵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 임금인상 한자리 수 억제정책

임금인상 한자리 수 억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1990년 12월 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부총리,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노사관계 및 임금안정 대책회의」에서 천명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1991년 임금협상에서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대기업의 임금인상을 기본 5%, 생산하위직 7%로 억제하고,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2~3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임금인상 한자리 수 억제정책은 물가 급등, 무역수지 악화 등 경제위기의 원인이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상승과 노사분규에 있다고 몰아붙이면서 노사 자율적인 임금교섭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표현이었다.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경제단체협의회는 1991년 정기총회에서 임금인상을 한자리 수로 억제할 것을 확인하였다.

임금억제정책을 관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노재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정부출연기관의 임금인상을 5~7%로 억제하지 않으면 폐쇄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빌언을 하는 것으로 노골화하기에 이르렀다. 상공부도 30대 재벌그룹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노사관련 시책(임금억제 시책)에 비협조적인 업체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시책 이행업체에 분규가 발생하면 긴급운영자금, 대체인력 투입 등을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다(4월 20일 상공부 공고 「노사분규로 인한 애로기업지원 및 확인요령」에서 구체화됨). 또 3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를 TV,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하면서 노동자의 자제와 임금인상 억제를 사회적 합의인 양 몰아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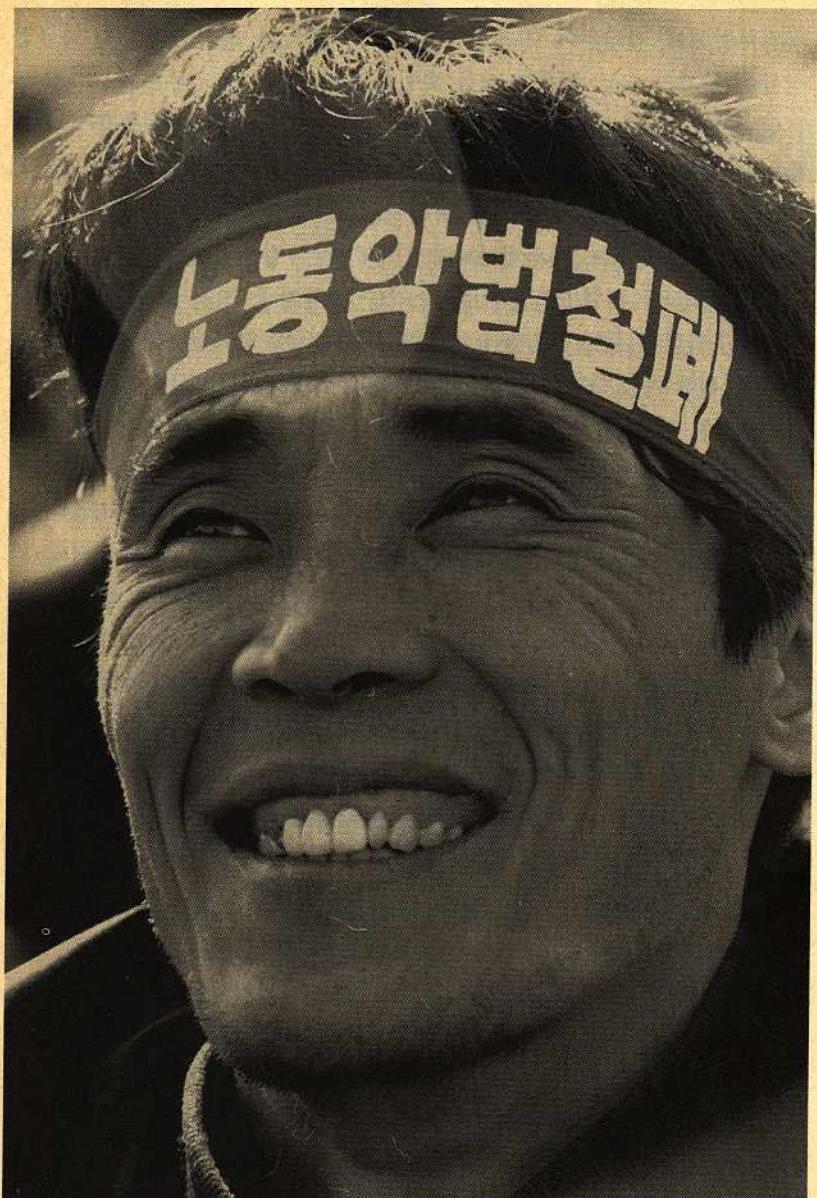
정부투자기관 등 공의사업체의 임투는 정부의 한자리 수 임금억제 방침에 의해 노사간 교섭에 의한 임금타결이 아니라 일방적인 한자리 수인상 통첩을 노동조합이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로 그 수준이 떨어졌다. 심지어 과학기술처 산하 원자력연구소 등 5개 정부출연기관·연구소에서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도 없이 임금인상을 7%로 일방 결정하여 1월분 급료를 지급하는 사태까지 있었다.

일반 사업장에서도 단체교섭에 임한 사용자들은 상공부와 노동부의 압력을 평계삼아 성실한 임금교섭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자리 수 임금인상이어야 한다는 사용자의 강압적 교섭태도는 임금교섭을 지연시키고 노사 간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만을 불러왔다.

이러한 정부의 한자리 수 임금인상정책은 공권력 투입, 노동조합간부구속 등 노동운동 탄압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강제되었다.

2) ILO 가입과 노동법 개악 기도

1991년 9월 17일 남·북한 정부가 UN에 동시 가입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그동안 가입을 거절당해 왔던 ILO에도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 1991년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이래 소강상태에 빠져 있던 노동법 개정운동이 다시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제까지 노동자들은 복수노동조합 금지조항, 제3자개입 금지조항, 정치활동 금지조항 등 허용되는 것보다는 금지되는 것이 더 많았던 노동악법의 족쇄에 뒷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노동 3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기에 국제노동기구의 가입을 계기로 현행 노동관계법상의 전근대적이고 독소적인 조항들이 국제노동기구의 수준에 맞도록 전향적으로 개정 또는 삭제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ILO의 핵심 조약인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원칙 적용을 정한 조약)등은 국내 노동조건과 맞지 않는다는 구실로 이를 비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와 동시에 총액임금제, 변형근로시간제, 시간제 근로, 단체교섭의 대표권 확립, 단체협약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노동법 개악안을 내놓음으로써 현행 노동법을 독점자본의 측면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악하여 노동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자본가와 정권의 의도를 확연히 드러내었다.

(1) 총액임금제

노총이 이를 받아준다면 다른 개정조항은 모두 양보할 수 있다.

총액임금제를 비롯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임금 지도지침 등을 통해 일반 기업들이 내년 봄 임금교섭 때부터 총액임금제에 근거하여 임금인상을 결정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또는 벌금을 물리겠다.

이상은 최병렬 노동부장관이 총액임금제를 강행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으로서, 노동법 개악을 통하여 정부와 자본가가 노리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총액임금제를 통한 임금인상 억제임을 알 수 있다. 노동부는 총액임금제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의 임금체계가 복잡다기하다는 것과 기업별·업종별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두 가지 근거를 들고 있다. 그

려나 기본급과 수당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는 그간 정부의 강제적인 저임금정책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차별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기업의 임금인상 억제책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단가 중심의 하청관계가 기술능력 중심의 관계로 정립될 때에만 해소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자본가측은 정부의 이같은 총액임금제 추진과는 별도로 시급 연봉제 도입을 통한 임금체계의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연봉제 도입에 따른 포괄역산방식이란 미리 1년 동안 지급될 임금의 총액을 정해놓고 그 배분방식을 변경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그 궁극적 목적은 현재의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생산성 중심으로 전환해 임금을 생활보장의 차원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확실히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총액임금제나 자본가들의 시급연봉제 도입시도는 전산업에 생산성 임금제를 정착시켜 성과배분에 따른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결국에는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겠다는 자신들의 강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2) 변형근로시간제

변형근로시간제란 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1일 8시간 이상 일을 시켜도 임금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토요일 격주 휴무제 실시'를 빌미삼아 등장하였다. 정부와 자본가측은 토요일의 4시간 근무가 비효율적이고 에너지 손실이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토요일 격주 휴무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토요일 격주 휴무제는 변형근로시간제의 한 실태일 뿐 실제로 변형근로시간제가 실시될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주 4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에 10시간을 부리든 12시간을 부리든 기본급만 주면 되므로 야근수당, 특근수당과 같은 연장근로수당이 거의 없어지게 되거나 대폭 줄어버린다. 현재와 같은 저임금 체계하에서 그나마 노동자의 기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장근로수당이 원천봉쇄되어 버리는 것이다.

둘째, 현행 노동법하에서는 설사 일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8시간 일을 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나 변형근로시간제하에서는 자본가의 사정에 따라 일할 시간이 결정되고 필요하면 일할 시간을 엿가락 늘이듯이 늘일 수 있고 일거리가 없으면 대폭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가는 한 번 일을 시킬 때는 최대치로 일을 시켜 이윤을 남기려 할 것이다. 즉 노동강도가 엄청나게 강화되는 것이다.

(3) 시간제 고용 확대

정부는 시간제 근로의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구실로 주당 소정의 근로시간이 기본 근로시간(44시간)의 70%(30.8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주휴일, 연·월차 유급휴가, 유급생리휴가, 산전·산후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인력난 문제의 해결과 기혼여성의 취업확대를 위해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력난은 시간제 고용 확대가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확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설사 시간제 고용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제 노동자에게는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의 보장이 전제될 때 의미 있는 것이다. 결국 시간제 고용의 확대는 주로 고령층과 부녀자층으로 구성되는 시간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최저 근로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둑어두는 한편 일반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마저 억누르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다. 시간제 노동의 범제화는 고용형태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노동자 사이의 차별화를 확대하게 될 것이다.

(4) 단체협약기간 3년으로 연장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임금협약은 1년, 그 외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여도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각각 1년과 2년으로 되어 있어, 이로 인해 연 2회의 단체교섭이 발생하여 많은 비能把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는 개악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기간이 이처

럼 장기화될 경우 경제·사회적 제반 여건들의 급속한 변화에 노동조합이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어렵게 된다. 특히 최근의 우리나라처럼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이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질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독소조항을 포함한 전면적인 노동법 개악을 서두르면서도 정치활동 보장, 사업장 밖 쟁의행위 금지규정 삭제, 조합비 상한 규정 철폐 등을 거론하며 노동법 개악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상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 법과 선거법상의 관련규정이 고쳐지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여전히 불법의 테두리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또 사업장 밖 쟁의행위가 허용된다 해도 집시법,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사업장 밖에서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결국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시도는 ILO 가입에 따라 낙후된 국내의 노동관계법을 개정정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축되어 있는 노동운동을 전면적으로 약화시키고 임금과 복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통제할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노동법을 독점자본의 축적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악하겠다는 것이다.

3) 노동부 지침

매년 빠짐없이 임금관련지침, 노동쟁의 처리지침을 비롯한 각종 지침을 남발하여 노동자의 생존권과 단결권 등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 온 노동부는 1991년에도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확보와는 거리가 먼 술한 지침들을 발표하여 정권과 자본가를 위한 기관임을 확연히 드러내었다.

(1) 노동쟁의 처리지침

노동부는 1991년 4월 13일 각 지방노동사무소, 노동위원회 등 산하기관에 『노동 3권의 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적법쟁의 판단지침 책자를 내려보내 이 지침에 따라 근로감독, 노동위원회, 노사교육 등을 실

시토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 중에서 1991년에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인사·경영권 관련 쟁의 행위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지위에 대한 노동부의 지침이었다.

인사경영권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교섭력이 강화됨에 따라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사동수의 정계위원회 구성, 채용·징계·해고시의 노사합의 등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분쟁이 늘고 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쟁의행위는 목적이 정당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인사경영권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 한으로서 노동 3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관여할 수 없듯이 근로자도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대우조선의 경우에도 1991년 초 파업의 주요 쟁점이 해고·채용시의 노사합의, 노사동수의 정계위원회 구성 등이었는데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해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고 만일 노사가 경영·인사사항을 단체협상으로 타결했을 경우 이를 용납하지 않고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함으로써 인사경영권 관련 쟁의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즉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인사사항에 대하여 부당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노동조합이 이같은 경영·인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민사·형사상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노사 간의 분쟁거리가 되고 있는 인사·경영관련 조항은 노사동수의 정계위원회 구성, 징계·해고·휴직사유와 절차의 명시, 폐업 또는 공장이전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항들이 노동자의 생활과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이 이들 조항을 단체교섭에서 요구하는 것이 인사·경영권 침해라는 정부와 자본가의 주장은 결국 기업주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사문을 닫아도 된다는 것이 된

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의 인권은 노동조합이 생기기 이전, 노동자 보호법이라는 노동법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와 다름없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 민사지방법원 41부는 1991월 9월 12일 경향신문사 노동자들의 해고무효 확인소송 판결문에서 “기업의 경영과 인사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그것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지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단체교섭이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인사·경영 관련 사항이 결코 자본가의 성역이 아님을 확실히 하였다.

결국 인사·경영 관련 쟁의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지침은 노동법도 노동조합도 없던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을 답습하겠다는 고루한 발상이며,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통한 산업현장에서의 인간적 권리 회복이 이미 제도화·합법화하여 있는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노동탄압국이라는 혐의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지위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서라면 대법원 판례조차 완전히 무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노동부는, 법원의 거듭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극력 부인하고 있다.

개별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조치로써 고용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해고상태에서는 노동조합의 임원 및 단체교섭위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해고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라는 요구나 해고자가 단체교섭의 위원으로 나오는 것은 위법·부당하여 정당한 쟁의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러한 잘못된 지침에 의거하여 울산 현대자동차노동조합과 회사에 각기 공문을 보내어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단체협약 규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도록 명령하였는데 변경·취소명령이 내려진 이 회사 단체협약 제7조 2항은 “회사는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1990년 5월 노사합의로 신설된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러한 해석은 대법원이 1991년 11월 8일 대림기업

사 전 노동조합위원장인 변영철씨 사건에서 “해고된 근로자라도 상당한 기간 안에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한 것과도 정면 배치된다.

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제3조 4호 단서인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해고 조합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계속 노사 간에 분쟁거리가 되자 이번의 노동법 개악추진 과정에서 이 귀찮은 혹을 떼어 버릴 작정을 하였는지 아예 이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단서조항이 그동안 노동운동 탄압의 수단이었던 사용자들의 부당해고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었음을 감안할 때 노동부의 이러한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2) 협약체결권

노동부는 1991년 7월 5일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조합규약 중 「협의의 인준」 조항을 삭제하도록 전국 해당 노동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에는 조합대표를 입건 조사키로 하였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교섭권만 있고 체결권이 없을 경우 노사협상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화되어 산업평화를 깨뜨리고 노사 간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 1991년 한 해 동안 (주)고려, 동국제강, 서울 지하철노동조합, 포항의 강원산업, 창원의 쌍용중공업 등 주요 사업장에서 사용자측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유로 교섭을 기피해 이에 반발한 노동조합측이 파업에 들어가는 등 협약체결권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연합철강노동조합은 부산 남구청으로부터 “단체협약 및 제협정의 체결동의에 충회가 표결권을 갖도록 한” 노동조합 규약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당 노동조합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자 이에 반발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1년 9월 25일 “협약 체결 찬반투표는 적법하다”는 승소판결을 부산 고등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 판결은 “노동조합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투표와 관계없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노동부의 위법한 지침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대표에게 체결권을 위임받아 올 것을 요구하면서 교섭을 기피해온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담당 재판부인 부산 고등법원 제2특별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의 본질은 자주성에 있으므로 단체협약 체결권도 본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에 있고 단체협약 체결에 관해 자주적으로 규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당연하다” “교섭결과가 찬반투표에 의해 부결되어 교섭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체결권은 노동조합 대표가 아닌 노동조합에 있는 것이므로 교섭권과 체결권은 분리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위법부당한 지침을 통한 노동부의 노동조합활동 개입에 제동을 걸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경총은 ‘연합철강사건(단체교섭권한)에 관한 경영계 의견송부’라는 공문을 대법원을 통해 담당법원에 제출하였다. 경총은 이 의견서에서 “법리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체결권까지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장차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할 우려가 있다”는 압력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3) 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

현행 쟁의조정법은 병원, 교통, 금융 등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또는 행정관청의 요구에 따라 강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사업체의 파업 등이 일반사업장과는 달리 공공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파장도 크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것이지만, 공공의 이익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공익사업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 3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의도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시지부의 경우는 직권중재에 회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쟁의행위신고를 내지 않고 바로 파업에 들어갔고 서울 시내버스노동조합도 1991년 4월 27일 쟁의행위신고를 내지 않고 파업을 강행

하려 하였으나 사용자측과 막판에 협상이 타결되어 파업을 철회하였으며 은행노동조합 또한 직권중재 조항에 걸려 한자리 수 임금인상을 끝내 돌파하지 못하였다.

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가 노동현장에서 실효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1991년 10월 4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이후 노동위원회가 병원, 택시, 버스, 은행 등 공익사업체의 노사분규를 중재한 건수는 모두 109건이나 그 중 당사자가 재정결정을 거부한 건수가 절반에 가까운 50건으로 이들은 재정을 무시하고 불법쟁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공권력 투입, 박창수 위원장 의문사

정부에 의한 노동운동 탄압은 1991년도 파업사업장에 대한 무차별적 공권력 투입으로 나타났다. 공권력 투입은 구속 노동자를 양산하였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위축시켰다.

공권력은 노사합의, 노동부 중재로 이루어지는 교섭장에서조차도 무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정부는 노동통제 목적을 위해서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동현장에 경찰을 투입했다. 따라서 1991년 내내 무차별한 경찰의 개입이 노사분규를 격화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노동운동을 물리적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한 정부의 탄압 속에 한진중공업 박창수 위원장의 죽음이 자리잡고 있다. 정보기관의 끊임없는 전노협 탈퇴공작과 대기업 연대회의의 무력화를 위한 사전구속으로 수감상태에 있던 박창수씨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그 진상은 끝내 밝혀지지 못했다. 또 박창수씨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 벽을 부수고 난입한 백골단의 모습은 공권력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노동현장의 축소판이었다.

1) 파업사업장에 대한 무차별적 경찰 투입

1991년은 보도국기자에 대한 징계·해고조치에 항의하여 농성중이던 평화방송에 1월 24일 경찰 600명이 투입되어 조합원들을 강제 해산시킨 것을 시발로, 12월 22일에는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며 파업중이던 해태 유통 조합원을 강제연행하여 해산시키기까지 10여 개가 넘는 굵직한 사업장에 경찰이 투입된 한 해였다.

지난해 KBS 방송민주화투쟁을 무력으로 탄압한 최병렬 문공부장관이 노동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파업사업장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협박은 현실의 탄압으로 다가왔다. 공권력 투입 위협은 교섭석상에서 사용자의 무성의를 조장하였고, 파업에 돌입하는 노동조합은 적법절차에 상관없이 경찰의 침탈에 대비해야 했다.

경찰 투입은 대개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고소·고발 조치, 사용자의 교섭거부, 경찰투입 요청이라는 절차를 밟아 진행되었다.

3월 21일과 6월 3일에는 대우정밀, 3월 27일 대우조선, 4월 8일과 5월 8일 대우자동차, 6월 6일 태평양화학에 대한 경찰투입은 대기업 연대 회의에 대한 탄압과 임금인상투쟁의 열기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배경에서 진행되었다.

6월 2일 인천의 동신공업과 부산의 제일교통, 6월 12일 서울의 세원, 6월 23일과 7월 12일 동서식품, 6월 24일 동영알루미늄, 7월 14일 삼양 금속 사업장에도 경찰이 투입되어 조합원의 농성을 강제해산하고 조합 간부를 구속했다.

경찰투입은 파업현장뿐만 아니라 조합 간부를 연행하기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과 교섭장을 급습하는 형태로도 나타났다.

파업사업장에 대한 무차별적 공권력 투입은 노사 간의 임금교섭마저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1 : 교섭장에 경찰이 난입한 동서식품

동서식품의 공권력 투입은 경찰이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전면 부인하여 노동부가 중재에 나선 교섭장에까지 경찰 병력을 투입, 노동자 교섭대표를 강제 연행하여 충격을 주었던 경우이다.

사건의 발단과 경과는 이러하다.

(주)동서식품(대표 최인호)은 20년 간 국내 커피시장을 독점해 연 3천 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이다. 1988년 8월에 33명의 노동자가 모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인천 북구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구청 노정계에서는 노동자들을 시청으로 보낸 뒤에 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이른바 회사의 사주를 받은 ‘유령노동조합’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유령노동조합’을 설립한 후에도 회사는 노동조합이 없는 줄 알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우회를 결성하게 하여 사우회와 임금교섭을 진행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철저히 부정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자주적인 노동조합 결성의 길이 막힌 것을 알게 된 노동자 450여 명은 1991년 5월 13일 “유령노동조합 해체와 민주노동조합 건설”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 회사측은 노동조합 결성을 허용할 수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여 농성이 장기화하였다.

농성 42일째인 6월 23일 새벽 5시경, 경찰 1천여 명이 농성장에 투입되어 강제해산을 시도하자 이에 항의한 노동자 125명은 경찰에 쫓겨 27 미터 높이의 사일로 옥상에 올라가 농성을 계속하였다.

노동자의 요구를 강압적으로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로 일관한 회사측은 노동자 32명을 형사고소하고, 허기에 지치면 농성자들이 자진해산할 것이라면서 가족들이 옥상 농성자들에게 음식물과 식수를 올려주려고 하는 것마저 이를 동안 차단하였다.

회사측과 부평경찰서(정보과장)는 교섭시 노동자의 신변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여 6월 29일부터 사내 복지동 2층에서 교섭이 재개되었다. 다섯 차례의 교섭은 민·형사상 책임문제로 담보를 거듭했다. 7월 12일 오후 3시 15분부터는 노동부 인천지방 북부사무소(소장 정낙석)의 중재하



▲ 사일로 옥상에서 농성중인 동서식품 노동자들, “가족 가족 하면서 부식중단 웬말인가!”

에 손중석씨 등 노동자 대표 7명과 회사측의 최진택 전무 등 3명, 노동부 북부사무소장, 한국노총 인천본부 의장 이병오씨가 참석한 가운데 복지동 2층에서 교섭이 이루어졌다.

노사 양측은 “오늘중으로 최종 협상안을 마련해 꼭 타결해서 회사를 정상화하자”는 데 합의하고 양측의 최종 요구안을 조정하기 위해 정회한 후 노동자 대표와 이병오 의장이 교섭장에서 숙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부평경찰서 정보과장의 지휘 아래 무술경찰 30여 명이 교섭장에 난입하여 사전구속영장도 없이 노동자 대표 7명을 구타하고 입에 테이프를 붙인 채 강제연행하는 만행이 벌어졌다.

농성노동자들은 회사와 경찰의 신변보장 약속과 노동부의 중재하에 이루어지는 교섭장에까지 경찰이 난입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터라 별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연행되고 말았다. 노동부의 중재와 평화적 교섭이 경찰에 의해 깨어지고 만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런 사태가 회사측과 정부기관의 노동탄압 음모라고 주장하며 격렬히 비난하였다.



▲ 파업중인 삼양금속노동조합

강제연행 후 3월 14일부터 15일에 걸쳐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옥상 노성자에 대한 강제 진압을 했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노동자 대표는 회사의 강요 속에 경찰서에서 회사측과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33명의 고소자 중 27명에 대해서 고소취하”에 합의하고 자진해산한 노동자들도 다시 연행되어 총 10명이 구속되었고, 손중석씨와 연대보증인 2명에게는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있다.

사례 2 : 삼양금속노동조합

삼양금속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편승하여 사용자의 무성의한 교섭, 조합원에 대한 회사의 고소, 경찰투입 요청, 파업현장을 경찰이 침탈한 후 노동자를 구속했던 공권력 탄압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삼양금속노동조합은 회사측이 4년간 기피해온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1990년 11월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일당 2,786원 인상과 노사동

수의 징계위원회 구성 등 노동조합측의 요구와 회사가 내세운 인사·경영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 개입 절대불가, 5% 인상안이 대립하여 교섭이 결렬되자 1991년 5월 13일부터 노동조합은 파업에 돌입하였다.

조합원 6명은 파업시작과 함께 공권력 투입에 대비하여 38미터 높이의 취수탑에 올라가 농성을 하였고, 회사측은 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 18명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후에 경찰 투입을 요청했다.

노동조합은 파업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대폭 양보한 타협안을 제시하였고 교섭을 거부하는 사장집 앞에 천막을 치고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회사측으로부터 세 차례의 공권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구실을 들어 7월 14일 새벽 5시경 경찰 1천여 명을 공장에 투입하여 농성중이던 조합원을 강제 해산시키고 9명의 조합원을 구속하였다. 7월 22일 취수탑 농성을 자진해산한 조합원 5명도 곧바로 구속되어 총 14명이 구속되었다.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은 경찰의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구속 이후 타결이라는 절차만을 남겨놓고 끝난 것이다.

2) 대기업 연대회의 침탈

1990년에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전노협에 집중되었다면 1991년에는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동조합회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탄압에 집중되었다.

대기업 연대회의(상임의장 백순환)는 1990년 12월 9일 16개 대기업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대기업 연대회의는 출범식에서 ▲정권과 자본가의 전면적인 노동조합 탄압에 공동 대응하고 ▲자주적인 민주노동조합들 상호간의 대동단결을 위해 노력하며 ▲참가노동조합의 조직역량을 강화해 지역적 전국적 연대를 위해 노력하고 ▲노동자들의 당면문제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등 민중적 과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기본방향을 밝혔다.

1991년 임투를 앞두고 대기업 연대회의가 출범한 것은 노동부 지침과

〈표 1〉 대기업 연대회의에 대한 1991년도 탄압현황

(단위 : 명)

노동조합명	위원장	총구속자	총해고자
금호타이어	구속	1	1
기아기공	구속	9	
대우정밀	구속	28	43
대우기전	구속	1	2
대우자동차	구속	38	62
대우조선	구속	20	9
서울지하철	구속	1	
세일중공업			
아세아자동차			
태평양화학	구속	6	30
풍산금속	구속	5	3
현대중공업	수배	1	7
한진중공업	구속	7	6
현대정공(울산)	구속	3	1
현대정공(창원)		1	1
합 계	구속 11, 수배 1	121	165

주 : 15개 노동조합(포항제철노동조합은 탈퇴)의 1991년 1월 1일~1991년 12월 31일까지 조사임

임금 한자리 수 억제정책 등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강경대처를 선언한 정부와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을 예고하였다.

2월 8일 대우조선노동조합의 전면파업으로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경찰은 대기업 연대회의 간부 수련회를 마치고 나오던 간부 67명 전원을 2월 10일 불법 연행하여 "연대회의가 파업중인 대우조선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논의했다"는 이유만을 들어 제3자 개입 혐의로 위원장 등 7명을 구속하고 60명을 입건했다. 대기업 연대회의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인 사전 강경탄압이 시작된 것이다.

간부 구속에 대한 부분파업과 규탄시위가 확산되자, 정부는 항의파업

에 앞장섰던 대우자동차, 대우정밀에 경찰을 투입하였다. 다시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의 파업과 가두시위에 대해서도 재차 경찰을 투입하였다.

이러한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투쟁은 구속중이던 한진중공업노동조합 위원장 박창수씨의 의문의 죽음으로 이어져 전국적인 노동자의 투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임금인상투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강경탄압은 대량구속, 사업장에 대한 경찰 투입, 대량징계,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면서 대기업 연대회의의 무력화를 강요했다. 이런 탄압의 결과 1991년 한 해 동안에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 121명이 구속되고(이 중 11개 노동조합위원장 구속) 165명이 해고되었다.

사례 1 : 대우조선 파업과 조합간부 구속

대우조선노동조합은 ▲상여금 600% 지급 ▲노사동수의 정계위원회 구성 ▲무노동 무임금 철회 등의 단체협약 요구가 스물네 차례 교섭에서도 결렬되자 104미터 높이의 끌리앗 크레인에 노동조합지도부가 올라가면서 2월 8일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의 파업은 1991년 임금인상투쟁의 향방을 기늠하는 척도로 인식되었고, 쟁의원인도 인사·경영문제 등 노동부 지침과 부딪치는 전국적인 공동사안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정부는 투쟁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대회의 간부를 대거 구속하고 대우조선에 대규모 공권력 투입을 진행해 나갔다. 그러자 노동조합은 애초의 단체협약 요구안에서 후퇴한 수정안을 제의했고 파업 7일째 가 되던 날 김우중 회장과 단체협약 쟁점사항을 타결했다. 회사측은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하고 파업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한 달 반이 지나 노동조합이 임금인상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에 회사측은 기존 합의사항을 스스로 깨뜨리고 한 달 반 전에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집행부를 고소하였고,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 이 3월 27일 새벽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간부집을 침탈하여 위원장 등 5



▲ 파업중인 대우조선노동조합 노동자들

명을 전격 구속했다. 파업 이후에 수배중인 상태도 아닌데도 불시에 노동조합 간부를 구속한 것은 노동자에 대한 구속 남발이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것이었다.

이 구속사태 또한 노동통제 방침에 걸림돌이 된다면 언제라도 노사합의를 뒤엎고 노동조합 집행부를 왜해시키겠다는 정부의 강경탄압이 빛은 결과인 것이다.

사례 2 : 집중탄압을 받은 대우자동차노동조합

1991년에 가장 격렬한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고 가장 집중적인 탄압을 받은 사업장은 대우자동차였다.

대우자동차의 파업투쟁은 통상적인 임금교섭 결렬,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2월의 시위도 4월과 5월에 걸친 파업도 모두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서 비롯한 것이다. 대우자동차 조합원의 투쟁은 정부의 공권력 조기 투입, 즉각 구속·수배 등 노동조합 무력화 기도에 대한 조합원들의 항의로 시작되어 격화해 간 사례이다.

임금교섭이 진행중이던 4월 8일,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교육을 마치고 조합사무실에서 교육에 대한 평가회를 갖고 있던 중 오후 5시 40분경 백골단과 사복경찰 200여 명이 난입하여 수석부위원장장을 연행하고, 수갑이 채워진 사무국장을 무차별 구타하면서 연행하였다.

경찰난입 소식을 전해들은 조합원들은 작업을 중단하고 심야까지 경찰과 격렬한 투석전을 벌였다.

2월에 위원장이 구속된 후 수석부위원장 체제로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중에 노동조합 대표가 조합사무실에서 납치되다시피 연행된 것에 대한 조합원의 분노는 부산과 판매지부로까지 확산되었다.

회사측은 정상조업과 법을 지킬 것만을 주장하였고, 4월 17일에는 부평공장의 휴업을 공고하고 휴업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농성을 주도한 조합원 3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조합 집행부 대부분에게 수배조치가 내렸다. 경찰이 조합사무실을 침탈한 것



▲ 대우자동차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이은구 위원장에 대한 불법 연행·구속에 항의하고 있다.

을 회사측은 조합집행부 대부분을 격리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이다.

조합간부 대부분이 구속·수배된 상태에서 조업이 재개되자 회사 주위에는 전경 4명과 백골단 1명이 한 조가 된 경찰의 철통 같은 감시와 경비가 조합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의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합원들은 조업을 강요받았다.

5월 8일 ▲구속자 석방과 수배 해제 ▲임금교섭 재개 ▲경찰병력 철수를 요구하는 작업거부가 행해졌고 경찰은 즉시 800명의 인원을 투입해 조합원 371명을 강제 연행하였다. 정부의 공권력 앞에 대우자동차노동조합 조합원의 요구와 행동은 차례로 무너져 갔다.

경찰의 개입으로 시작해서 경찰 투입으로 끝난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의 격렬한 투쟁과정에서 62명의 조합원이 해고되고 38명의 조합원이 구속되었다.

3) 박창수 위원장 의문사

1991년 2월 10일 대기업 연대회의 간부 연행시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한진중공업노동조합 위원장 박창수(31세)씨가 5월 6일 새벽 5시경 안양시 안양병원 7층 옥상에 서 떨어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박창수씨의 죽음은 강경대씨 타살사건으로 인한 5월 투쟁과 임금인상 투쟁시기와 맞물려 정권의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전국적인 규탄투쟁을 불러일으켰다.

전노협, 대기업 연대회의, 한진중공업노동조합 등 6개 노동단체는 '고 박창수 위원장 옥중 살인 규탄 및 노동운동 탄압 분쇄를 위한 전국노동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철저한 사인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노동부, 법무부장관 구속 처벌 ▲구속노동자 등 양심수 석방과 수배 해제 ▲ 노동악법 등 반민주 악법 철폐 ▲구치소내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했다.

시신탈취와 강제부검 검찰측은 박창수씨의 사인을 투신 자살로 단정했다. 그러나 유가족은 박창수씨가 유언이나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링케르병을 끊고 옥상으로 올라간 점, 죽음 직전까지 면회온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투쟁에 동참하지 못해 미안하다. 꼭 살아나가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말하는 등 삶에 애착을 보였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5월 6일 12시경에 유가족과 변호사, 백기완 선생, 국회의원 등이 박종환 검사, 안양경찰서장, 병원장과 회의를 갖고 경찰병력 철수 및 양측 합의하에 부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합의 다음날인 7일 새벽 5시경부터 시신이 안치된 안양 병원에 1200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영안실 뒤쪽 시멘트 벽을 해며 등으로 직경 1미터 가량을 부수고 들어가 유족마저 끌어내고 시신을 탈취하였다. 경찰의 시신탈취 과정에서 노동자·학생 등 300명이 격렬히 저항하였고, 다수의 부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141명이 연행되어 19명이 구속

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시신을 탈취한 뒤 유족도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강제부검을 실시하였고, "부검 결과 박창수씨는 추락에 의한 충격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의 시신탈취와 강제부검은 박창수씨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사인을 규명할 의지가 없음을 폭로하는 만행이었다.

안기부 개입 의혹 유가족과 대책위는 5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창수씨의 죽음에 안기부가 관련되었다고 폭로하였다. 미망인 박기선씨는 사망 하루 전인 5일 저녁 7시경 장세군 한진중공업노동조합 사무국장과 남편이 중환자실 밖으로 나갔다가 5분쯤 뒤에 다시 돌아와 "안기부직원과 전화통화를 했다. 공중전화로는 길게 통화할 수 없어 안기부직원에게 병실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곧이어 병실로 7시 20분경과 40분경 두 차례 전화가 걸려 왔으나 남편이 직접 통화를 못하고 장 사무국장이 통화했다"고 밝혔다.

또 박창수씨는 안기부직원으로부터 "한진중공업노동조합이 전노협에서 탈퇴하면 석방되도록 힘써 주겠다. 완전 탈퇴가 어려우면 형식 탈퇴를 선언하고 내부적으로 계속 관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회유를 받았다고도 말했다는 것이다. 한진중공업노동조합 간부들도 안기부가 오래 전부터 한진중공업노동조합이 전노협과 대기업 연대회의에서 탈퇴하도록 공작을 하였음을 증언하고, 박창수씨가 사망하기 전날 밤 안기부직원(홍상태)이 병원에 직접 찾아왔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박창수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안기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것은 박창수씨의 죽음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공작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박창수씨가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의해 살해되었는지 모른다는 의혹이 더욱 커져 갔다.

그러나 안기부 개입 여부는 의혹으로만 남게 되었다. 안기부 개입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장세군씨는 5월 8일 이후 행방을 감춰버렸고, 정부의 협조없이 유가족과 대책위만으로 안기부 개입의 진상을 밝힌다는



▲ 한진중공업노동조합 위원장 고 박창수 열사의 장례행렬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검찰은 6월 1일 중간 발표를 통해 “안기부 부산지부 노사조정관 홍상태씨는 5월 5일 박창수 위원장과 두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박창수씨의 죽음과 무관하다”며 안기부 개입설을 일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안기부 관련 부분은 더이상 수사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혀 진상을 은폐하려는 의도마저 보여주었다.

장례와 그 이후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박창수씨가 사망한 지 54일 만인 6월 29일과 30일 안양과 부산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의 애도 속에 ‘전국노동자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박창수씨가 노동자 탄압의 일환으로 정권, 안기부에 의해 공작 살해되었다는 심증을 굳혔으나 안기부의 치밀한 은폐조작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검찰은 “구치소 생활에 대한 염증과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회의로 투신 자살했다”고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유가족과 노동자들은 민주노동조합운동의 최전선에서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섰던 박창수 위원장이 자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그렇다고 공작살해를 뒷받침할 진상 규명도 할 수 없었다.

강제 부검과 안기부 관련수사의 중단, 장세군씨의 잠적으로 박창수씨의 사인 규명은 중단된 채 의문의 죽음으로 남아 있다.

3. 구속당한 노동자 인권

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조합 탄압은 구속노동자수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전노협이 제6공화국이 출범한 1988년 3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구속된 조합원수를 조사한 것에 따르면 총 1,634명으로 하루 1.2명꼴로 구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연도별 구속노동자 수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79명	602명	482명	471명

자료 : 전노협, 「제6공화국 이후 구속노동자 현황」

〈표 2〉 연도별 사업주 입건 또는 구속자 현황 (단위 : 명)

연 도	구 속	불구속	계
1988	10	7,890	7,900
1989	14	8,155	8,169
1990	21	7,448	7,469
1991. 6. 30. 현재	23	3,488	3,511

자료 : 국회노동위, 「1991 정기 국정감사 보고자료」

이 조사통계에 의하면 1991년 한 해 동안 구속된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의 수는 471명(노동조합 이외의 노동단체 구성원을 포함하면 495명)에 이르고 있으며, 1991년 6월에만 148명이 구속(하루 평균 4.9명꼴)되어 월별 최고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¹⁾

1991년에 조합원이 대량 구속된 사업장을 보면 대우자동차 38명, 대우정밀 28명, 기아자동차 27명, 동영알루미늄 27명, 대우조선 20명, 택시 노동조합연맹 산하 조합원 70명 등으로 거의가 파업 농성에 공권력이 투입되었던 사업장이다.

1991년에도 정부와 자본은 쟁의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경찰력 투입과 구속·수배를 노동조합 탄압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아자동차, 대우조선의 경우처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노동자를 대량 구속하는 사태와 노동부 중재하에 이루어진 동서식품 교섭장에까지 경찰이 난입하여 노동자를 연행·구속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천일정기화물에서는 노동조합 위원

1) 전노협, 「제6공화국 이후 구속노동자 현황」

장을 연행하기 위해 경찰이 파업중인 조합원을 권총으로 위협, 폭행을 가하는 사건까지 있었다.

사용자의 법규 위반에 대한 정부의 처리태도는 노동자와는 지극히 대조적이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제법규를 위반하여 노동부에서 고발한 사건은 대부분이 불구속 입건 처리되었다. 1991년 상반기에 3,511건 가운데 구속된 사용자의 수는 23명뿐이었음을 〈표 2〉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노동현장에서의 엄정한 법적용이라는 정부의 의지는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구속을 통해서만 관철되고 있을 뿐이다.

1)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구속노동자 현황

지금까지 구속노동자수에 대해서 관계당국은 공식집계하여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노협이 각 지역(업종) 노동조합협의회와 단위 노동조합 등을 통해 조사한 노동조합활동 관련 구속노동자의 현황은 노동자의 구속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3〉을 통해 구속노동자수를 쟁의행위 건수와 비교하면 1988년에는 1건당 0.04명인데, 1989년에는 0.37명으로 9배, 1990년에는 1.5명으로 1988년에 비해 37배 이상 크게 늘어났고, 1991년에도 2.01명에 이르고

〈표 3〉 구속노동자수와 노동쟁의 행위 발생건수 비교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구속노동자수(A)	79명	602명	482명	471명
쟁의행위 발생건수(B)	1,873건	1,616건	322건	234건
쟁의 행위 1건당	0.04명	0.37명	1.50명	2.01명
구속자수(C=A÷B)				

주 : 1991년 쟁의행위 발생건수는 노동부 발표 숫자임(다른 연도도 노동부의 노사분규건수 집계임)

자료 : 전노협, 「1991년 사업보고서」

〈표 4〉 적용법조문별 구속노동자 (단위: 명)

	1988. 3. 1~ 1991. 12. 31	1988	1989	1990	1991
업무방해	831	17	248	308	258
폭력행위	526	50	247	96	133
노동쟁의조정법	381	6	176	74	125
집회 및 시위	299	34	89	86	90
공무집행방해	122	34	23	38	27
기타	325	6	163	89	67
합계	2,484	147	946	691	700

주 : 구속사유가 확인된 노동자는 1,500명인데 적용법조문별 구속노동자의 합계가 2,484명인 것은 동일인에게 둘 이상의 법조문을 적용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자료 : 전노협, 「1991년 사업보고」

있다.

이 통계자료에서 구속사유가 확인된 노동자 1,500명에게 구속시 적용한 법조문을 보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381명(25%)보다 '업무방해' (55%), '폭력행위' (35%), '집회 및 시위' (19%), 기타(21%)로 노동관계법 이외에 일반 형법조문을 적용받아 구속된 노동자가 많다. 이는 구속의 목적이 노동조합활동에서 조합원을 일정기간 격리시키기 위해 형법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한 결과이다.

2) 노사합의를 무시한 구속

노동현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파업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교섭시에 합의한 사실도 무시하고 노동조합간부나 조합원을 구속, 수배하여 새로운 노사분규의 소지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무차별적인 개입은 민주적인 노동조합 집행부와 파업

을 철저히 통제, 분쇄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3월 27일 대우조선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구속에 이어 7월 6일 기아자동차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구속, 수배사태가 있었다.

기아자동차에서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독단적인 임금협약 체결에 반발하여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파업농성에 들어갔다. 7월 3일 회사측 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교섭을 통해 ▲농성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불문 ▲기본급 7천 원 추가 인상 등에 합의하고 정상조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사측은 스스로 내세웠던 회사 협상대표에게 적법성이 없다면서 합의 무효를 선언한 뒤, 조합원 4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검찰은 곧바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해서 조합원들을 구속하였다 (부록 3-1 참조).

조합원들이 투쟁을 통해 힘겹게 얻어낸 성과는 정부와 회사의 탄압으로 무너지곤 하여 정부와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과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3) 구속노동자에 대한 실형 선고

1991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노동자 구속은 대개가 노동조합 간부를 일단 구속하여 노동조합활동에서 일정기간 격리시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구속된 노동자는 대개 3~6개월 정도 구속되었다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났다. 1991년도에 구속된 노동자 417명 가운데 66%는 같은 해에 풀려났고 석방된 노동자의 91%인 238명은 구속된 지 5개월 이내에 석방되었다(전노협 조사 결과).

그렇지만 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공권력 조기 투입→즉각 구속·수배→법정최고형 구형의 방침에 따라, 몇몇 사업장의 구속노동자에게는 중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표 5〉 1심 및 항소심(2심) 선고공판 결과

성명	직책	1심선고	2심선고	비고
백순환	위원장	징역1년(실형)	징역1년6월	구속중
강용길	수석부위원장	징역1년(실형)	징역1년6월	"
이철현	사무국장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징역1년	"
김점수	회계감사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 1년	징역1년	"
나양주	전 교선부장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징역1년	"
송오성	전 조사통계부장	"	"	"
이창훈	전 기획실장	"	"	"
문재영	전 대의원	징역1년6월(실형)	징역1년	"
곽태영	전 대의원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징역10월	"
강명준	전 대의원	"	"	"
김형곤	전 대의원	"	"	"
박영철	조합원	징역1년(실형)	징역10월	"
조현철	전 대의원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쌍방항소기각	집행유예
박호서	회계감사	"	"	"
최창식	전 문화체육부장	"	"	"
박성호	조합원	"	"	"
김윤성	조합원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
최재준	조합원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

자료: 「대우조선 노보」 제50호

사례 1: 항소심에서 형량 추가, 법정구속

11월 22일 마산지방법원 항소심부에서 열린 대우조선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추가되어 이제까지의 사법부 관행을 깨뜨렸다는 데서 충격을 주었다. 더욱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7월 12일) 되었던 8명의 조합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시켰다(표 5 참조).

이런 결과를 두고 노동자들은 사법부마저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편승하여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비판을 주저하지 않았다.

또 이 선고 결과는 지난 9월 조합원들에게 폭로된 '대우조선 노무동향'이라는 회사의 대외비 문서 중에 회사가 관계기관에 요청한 "2심판결 협조, ·백순환, 강용길—실형증가 필요 ·2심 실형 전환 필요" (부록 3-2 참조)의 내용과 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그대로 일치하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대외비 문서에서 회사가 구속중인 간부와 집행유예로 풀려난 간부들을 내년 임금인상투쟁시기까지 현장과 격리시킬 것을 요구한 내용은 그야말로 회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법원 판결로 현실화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를 회사측의 요청이 정부 관계기관과 협조 아래 사법부까지 담합한 결과라고 결론짓고 격렬히 항의하였다.

사례 2: 조합원의 20%가 구속된 (주)동영알루미늄

경기도 평택군에 위치한 (주)동영알루미늄에서는 단체협약 결렬로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자 6월 24일에 경찰 400명이 투입되어 파업을 강제해산시켰다.

조합원 전체가 138명뿐인 노동조합에서 27명(조합원의 20%)의 조합원이 구속되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또 경찰의 강제해산과정에서 조합원들이 화염병을 던졌다라는 이유로 정창석(노동조합 부위원장) 등 다수 조합원이 1심 선고공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7년에서 2년 6개월까지의 중형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4. 노동운동 탄압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 청구

1990년 10월 22일, 노태우 대통령이 소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 노동부장관은 전국의 근로감독과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내렸다.

노동운동의 준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노동조합쪽의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하라.

이 지침이 시달된 이후 서너 개 사업장에 불과하던 손해배상 청구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1991년 10월 말 현재 총 17개 사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제 이 땅의 노동자들은 헌법에도 보장된 정당한 노동 3권을 행사하였다는데 이유만으로 구속, 해고되고 폭행당하는 등 갖은 고초를 겪어야 함은 물론 몇푼 안되는 월급으로 간신히 마련한 월세집, 전세집까지 날리고 숫가락마저 차압, 땃지를 붙이고 살아야 할 형편이 된 것이다.

사례 1 : (주)건화노동조합

건화는 대구에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이다. 1989년 7월 26일 회사측이 하기휴가 상여금을 종전보다 적은 액수로 지급하자 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8월 1일부터 7일간 자연발생적인 작업거부가 계속되었다. 회사측은 징계절차를 무시한 채 노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위원장, 총무부장 등을 해고하였는데 해고자들이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자 회사측은 이에 대한 맞불작전으로 위 2인에게 작업거부로 인한 1,8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은 집단행동에 대한 회사측의 원인 제공 사실과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해고조치의 부당함을 인정하면서도 냉각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의 행위를 시작했다는 수단의 불법성을 문제삼아 노동자 2인에게 회사가 청구한 액수의 30%인 54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노동조합은 결국 와해되고 위원장 이하 해고되었던 노동자들은 복직을 포기하였으며 노동부장관은 이를 모범사례로 제시하며 손해

배상에 관한 공식지침을 내리게 되었다.

사례 2 : (주)봉신·명신중기노동조합

인천의 주물 산업기계 생산업체인 봉신중기, 명신기계, 봉신산업주식회사는 계열회사로서 3개사 소속 노동자들이 모여 1988년 12월에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1989년 3월 단체협약 협상 결렬로 한 달 간 파업에 돌입했는데 구사대와 경찰의 투입으로 노동조합 위원장 등 4명이 구속되고 구사대가 노동조합을 장악하여 어용화하였다. 이후 구속자들은 석방된 이후 복직투쟁과 함께 1989년 11월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들의 복직투쟁이 노동자들 다수에 의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아가자 회사는 이에 대한 대처수단으로 해고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복직투쟁을 철회시키려는 의도로 행해진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어 해고자 4인 중 2인이 복직을 포기하였고 홍영표 당시 노동조합 부위원장과 황원정씨는 계속 법정투쟁에 임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제1차적 주체는 노동조합이며 노동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노동관계법의 기본취지에 위배되는 점과, 특히 회사측이 입은 손해액수가 전적으로 조업 중단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라고 추산하기에는 계산법상 구체적 근거가 불명확하다”하여 회사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노동자 탄압수단으로 남발되어온 사용자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제동을 건 것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손해배상 청구에 신중을 기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례 3 : (주)대우전자 인천지부 노동조합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인 대우그룹 또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교묘한 수단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의 임금과 조합비에까지 차압 땃지를 붙이는 데 성공하였다. 대우전자노동조합과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은 회사측의 손해배



▲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1991년 10월 22일자 일간신문 기사

상 청구로 인하여 각기 개인 임금의 절반과 노동조합비 및 쟁의기금 4천 만 원을 가압류당하는 기막힌 일을 당한 것이다.

대우전자노동조합은 각 공장별로 매년 1회 체육대회를 실시한다고 단체협약에 명시해 놓고 있다. 인천지부는 1990년 11월 3일 체육대회를 갖기로 했으나 10월 21일 광주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체육대회에 소요될 행사비를 광주공장 복구사업비로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체육대회를 취소하는 대신 당일은 휴무로 결의하였다. 인천지부의 이러한 결정은 회사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태에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애사심의 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이 휴업이 불법이라는 트집을 잡아 노동조합지부장 등 간부 5인을 상대로 7,2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손해배상 청구라는 법적 허울만 둘러쓴 자본가의 민주노동조합 와해책동에 맞서 대우전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회사측의 소 취

하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이와 관련한 재판을 계속 진행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원에 임금 가압류 신청까지 하였고 법원은 회사가 낸 임금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자 2인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5인의 임금을 배상액에 상당하는 액수가 될 때까지 절반씩 가압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동조합파가 활동하고 있는 대우전자노동조합 인천지부라는 대공장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자본가들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식될 정도로 그 과급력이 심각했다. 특히 회사측이 신청한 임금 가압류 조치를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그 파장은 더욱 커졌다는데 자본가의 손해배상 청구가 쟁의행위가 아닌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에 대한 불법시비를 이유로도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노동자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밖에도 창원의 (주)통일과 현대정공, 부천의 보성전자·한국 베아정밀, 인천의 보루네오기구·진성전자, 진주의 삼미금속, 대우자동차, 군지의 자동차 재벌인 기아자동차, 구속중 의문사한 고 박창수 위원장의 사업장인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탄압에 대해 노동조합 위원장이 할복을 시도했던 근로복지공사, 그외에도 태평양화학과 춘천 AMK 등의 사업장에서 민주노동조합을 와해시키거나 노동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적극 활용되었다.

손해배상 청구의 유형은 복직투쟁을 철회시키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경우와 쟁의행위가 불법임을 시비삼아 핵심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정당한 조합활동마저 불법활동으로 간주하여 조합원이나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특히 마지막 유형의 손해배상 청구는 동서식품과 현대정공 창원공장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현대정공 창원공장의 경우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총회를 하던 중 시간이 10분 초과하자 회사는 이에 대한 배상을 신원보증인에게 청구하였던 것이다. 이는 신원보증인을 내세워야 입사가 가능한 대기업의 입사조건을 악용한 행위로 신원보증을 선 사람들이 조합활동의 중지를 요구케 하는 탄압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나 치졸한

수단으로까지 전락할 수 있는지를 확연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자본가들은 왜 가난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일까?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이윤을 축적한 그들이 노동자들의 쥐꼬리만한 월급액수를 몰라서 어마어마한 거액의 돈을 실제 받아낼 생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일까?

자본가들은 손해배상으로 핵심 노동조합원들의 활동을 저지하고 조합지도부와 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하여 경제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결국은 민주노동조합운동 자체를 근원적으로 말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괴적 본질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의 배상책임 면제조항을 완전 무색케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면책조항이 생기기까지 세계노동자들이 이룩한 피어린 투쟁의 성과를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짓밟으려 한다는 데 있다. 한마디로 시계를 10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인 것이다.

5. 노동자의 사상과 정치활동 탄압

단적으로 말해 노동자는 아직 사상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의 정치활동 역시 사상의 자유와 함께 억압받고 있는 현실이다. 동서 냉전체제의 종식과 남북 간의 적대적 대치상태도 빠른 속도로 해소되고 있다.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하고,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택한 데 이어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고수하고 있다. 1991년에도 노동자 조직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노동운동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수배되었다.

노동자가 정치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노동조합법과 각종 선거관련법에 의해 금

지되어 있다.

노동자의 정치활동과 사상의 자유를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억압을 살펴보자.

1) 사무금융노련의 정치활동 탄압

6월 20일 실시되는 광역의회 선거를 앞두고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의장 권영길)는 6월 11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광역의회 선거를 민자당 심판의 장이 되도록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기권 방지 ▲야권후보 단일화 ▲민주인사 지지 등의 방침을 밝혔다.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재호)도 6월 3일 제91-3차 중앙위원회 결의로 ▲선거 참가 ▲민자당 후보 안 찍기 ▲민주인사 찍기 등 ‘광역의회 선거에 임하는 조합원 활동지침’을 연맹기관지에 게재하여 조합원에게 배포하였다.

이같은 활동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맹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은 연맹 위원장을 구속하였다(부록 3-4 참조).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에 산하 9개 업종의 사무직 노동자 1,1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1991년 3월 18일 발표) 응답자의 93%가 “우리나라의 민주화 진행 정도가 미흡”하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조합원의 의식을 토대로 사무직 노동자의 정치적 관심을 촉발하고, 선거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의 활동에 대해 기존의 악법을 내세워 연맹 위원장을 구속하였던 것이다.

2) 노동자후보 이현희씨에 대한 해고

(주)한국린나이노동조합 사무장인 이현희씨는 광역의회 의원선거 때 구로 제5선거구에서 노동자후보로 출마했다.

이현희씨는 5월 20일에 회사에 광역의회 선거 출마를 이유로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직처리를 서면으로 신청하였고, 선거를 마친 후

7월 1일 회사에 복귀하였다.

그런데 회사측은 이현희씨의 휴직 신청을 거부하며 결근 처리하겠다고 위협하더니 선거공고일(6월 1일)부터 6월 20일(선거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이현희씨를 전격 해고하였다.

회사는 근로기준법과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의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선거사무실과 선거관련서류 제출 등의 시간과 선거가 끝난 후 잔여업무 정리가 필요함에도 이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한 회사측의 태도는 평소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자의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노동자 조직사건

노동자의 정치적 각성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정권의 극단적인 혐오와 탄압은 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으로 구속된 박기평(필명 박노해)씨에 대한 사형구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노동자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선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구형한 것은 이땅에 과연 사상·양심의 자유가 존재하는가를 의심케 하는 사건이었다.

좌경세력 척결이라는 구호 속에 경찰청은 1991년 3월 14일 '경수지역 노동자연합'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이용석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김승호(노운협 의장)씨 등 9명을 수배하였다.

8월 26일에는 '반제반파소 민중민주주의혁명그룹'을 결성하고 주요 공단지역에서 각종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혐의로 박성인씨 등 19명을 연행해 1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청은 이들이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해 반제반파소 민중민주주의혁명을 목표로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하였다.

제 2 장

사용자에 의한 노동인권 탄압

1. 사용자 탄압의 특징

1990년에는 전국노동자협의회 결성식에 대한 집중적인 탄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탄압의 서곡을 열었다면 1991년은 구정 며칠전 대기업 연대회의 간부들이 단지 대우조선 사태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량 구속되는 등 대기업 노동자들의 단결을 막는 것으로 탄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1991년은 탄압이 집중되었던 전년도에 비교해 노동자들에게 훨씬 힘든 한 해였다. 연초부터 국제경쟁력 약화와 경제성장을 둔화의 책임이 상당부분 노동자에게 전가되면서 임금억제와 노동운동 탄압이 강화되었고, 심한 물가고에 고스란히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임금인상투쟁 등 각종 투쟁을 벌인 노동조합수는 줄어들어 노사 간의 관계가 안정국면에 들어갔다고는 하면서도(1991년 9월 노동부 발표) 오히려 회사측의 고소·고발과 일반 형법 등에 의한 무차별 구속은 늘어만 갔다. 생존권을 끊는 것이나 진배없는 해고사태도 늘기만 하였다.

게다가 연말에 들어와서는 '5 더하기 운동' 등 일 더하기 운동이 전언론을 동원하여 진행됨으로써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생산방식은 오히려 강화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견디다 못한 여성노동자가 자살하는 사건까지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살펴본 1991년 사용자 탄압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의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 관계자들에 대한 감시 체계가 거의 끈기없이 엄청난 규모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현대그룹의 현대자동차서비스의 블랙리스트, 현대중공업의 경비대원 사찰행위, 대우그룹의 경우 대우자동차의 상황일지와 해고자 인적 사항, 시간 할애 대상자 명단, 대우조선의 1991년 하반기 노사관계대책(5대 대의원 선거전략), 삼성그룹의 위조편지 사건, 삼성해고자 전화도청 사건, 기아자동차의 노동조합감시 서류, 부산신발업체의 8천 명이라는 대인원의 블랙리스트 등 대기업의 노동조합감시체계와 그 왜해공작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내었다.

둘째, 이제까지 파업기간의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더하여서,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기업주의 손해배상 청구가 늘고 있다. 파업행위가 곧 업무 방해이며 기업에 손해를 입힌 것이라는 사고에 기초한 이 청구소송은, 점차 노동조합활동의 위축이라는 실효를 거두면서 늘어만 가는데, 1989년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모두 17건에 배상청구 액수는 21억 1,344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연도별 소송추이는 1989년 1건, 1990년 5건, 1991년 11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¹⁾

셋째, 일할 사람이 없다는 기업주의 아우성과는 모순되게 오히려 한편에서는 잇따른 부도, 휴·폐업, 감원, 하청 등의 구조조정과 업종전환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조합이 심한 탄압과 조직와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 사용자의 폭력적 탄압은 1990년에도 1991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1991년의 사용자 탄압의 특징은 탄압이 더 노골적이고 과감하다는 것이다. 공권력의 비호가 갈수록 확실해지고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보수화되면서 사용자들은 대우조선의 예에서 보이듯이 협약을 맺고서도 약속을 위반하고 그 뒷감당은 공권력에 의한 구속 등에 맡기는 모습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워낙 편파적 행정이 일반화하다보니 노동자에

1) 『노사정보 91』

게 가스총을 쏜다든지, 차 앞을 막는 노동자를 그대로 밀어버리는 일이나, 평화방송 같은 언론사에서 노동조합 왜해작업을 스스럼없이 하는 등 의 일이 빈번하게 나타난 해였다.

2. 감시·납치·폭행

1) 감시

1991년은 회사측의 감시자료가 노동조합측에 의해 우연하게 발견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해이다. 현대, 대우, 기아 등 자동차 3사는 물론 부산의 신발업체 등 거의 모든 대기업이 불법적 감시체계 속에서 노동조합 약화나 왜해를 배후조종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렇게 발견된 문서들은 우연히 발견된 일부분의 서류여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대기업의 전면적인 노동조합 감시체계와 개입의 정도는 예측하기도 곤란할 만큼 거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시체계는 남몰래 감시하고 기록하는 저질적인 사생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이에 의해 본인과 가족이 당하는 고통이 극심하며; 업무평가를 넘어서 인사권이 비정상적으로 행사되는 등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큰 도전일 수 있다. 또 자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노동조합 조직에 대한 회사의 부당한 사찰은 노동조합법상에도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부당노동행위이며 노사간 뿐만 아니라 노노간에도 불신을 초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효율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데 그 문제의 근원이 있다 할 것이다.

(1) 선거개입과 노무공작

1991년 9월 대우조선 노동조합측이 입수해서 폭로한 자료 '1991 하반기 노사관계 대책(5대 대의원 선거전략)'이라는 선거공작 극비문서는 대우조선의 노무관리 수준과 노동조합 감시와 개입의 치열함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 중 일부를 보면 "목표 : 대의원 T/O의 80% 확보를 명시

하면서 4대 대의원 선거시 우리의 목표는 96명 중 온건 65, 강경 41, 후보자 성향은 온건 41, 강경 55였음, 결과는 강경 54, 온건 41명으로 집계하였음. 이는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포인트임”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회사측의 기본전략은 노동조합민주화 추진위원회(이하 노민추)와 비노민추 간의 확실한 구별을 짓고 비노민추를 단일화하여 공천한다는 것이다. 또 선거구 조정도 유리한 선거구를 잠정화정하고 열세 선거구는 소선거구로 유도하는 등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확정된 선거구도 회사의 의도대로 되었다. 선거관리 부분에서는 담당별 선거대책회의를 갖고 담당임원, 노무과장, 해당 연락과장 등이 모여 모든 회사조직을 동원하여 회사측 후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비노민추 후보자의 유세문 작성 요령 등 선거 전반에 걸친 구체적 지원계획이 수립, 시행되었다. 선거전략에 따르면 노민추 등 회사선거에 비협조적인 조합간부와 조합원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이들이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투쟁보다 정권퇴진 및 자본가계급 타도투쟁에 앞장선다는 점,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노동조합을 독자적인 민주집중제로 운영한다는 점, 극좌세력이라는 점을 집중 홍보하는 등의 특별 홍보방안을 마련하였다.

이같은 회사측의 선거지원대책은 ‘1~4대 대의원 현황분석’이라는 문건의 ‘후보자 숙지사항’ 항목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또 대우조선 노동동향은 1심에서 정역 1년을 선고받은 백순환 노동조합 위원장이 1992년도 임금투쟁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까지 출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게 하고(실제로 이렇게 선고되었다) 노민추 핵심인물들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협조사항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대우조선노무동향’은 공개된 다른 서류와 달리 ‘대우조선’이라는 회사명을 사용하고 있고 협조사항 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기관보고용’ 일 가능성이 크다.

2) 규모와 수준이 커져만 가는 블랙리스트

9월 16일 부산 신발업체인 금호상사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는 그 규모가 8천여 명에 이르는 메마드급 사찰자료였다. 금호상사 전산실에 입력된 ‘프로그램 ID’ 블랙리스트 디스크에는 모두 8천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성별, 현주소, 본적, 특기사항이 적혀 있고 구분란에는 출신학교, 일반 시국사건, 위장취업, 노동자의식교육 등 개인경력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특히 입력된 대상자 중에는 민주당 노무현 의원, 김희택 전민련 사무처장, 김진숙 부노련의장, 권인숙 노동인권회관 대표간사 등 재야 및 노동운동권 인물뿐만 아니라 노동상담소 출입자, 야학 출신자, 단순 교내시위 가담자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상세함에 더욱 놀라게 하였다.

이 리스트는 국제상사 등 부산지역 12개 대형신발업체 관계자들의 모임인 ‘노우회’가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1989년 만들어진 노우회는 국제상사, 화승실업, 아풀로제화, (주)신우, 금호상사, 승화, 진양, (주)스타원, 부산화학 등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매달 만나는 모임이다. 이 모임의 회장은 결성 당시에는 신우의 정태조 총무차장이 맡았으며 현재는 스타원의 박춘식 총무부장이 맡고 있다. 특히 이 정례모임에는 경찰, 노동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안기부 부산지부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북부지방 노동사무소는 9월 25일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금호상사 대표 이점수(53세)씨와 총무부차장 허찬(44세)씨 등 2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데 그쳤다.

현대자동차서비스의 경우도 1991년 2월 7일 노동조합측 폭로에 의해 블랙리스트가 상존했음이 밝혀졌다. 이 블랙리스트는 개인별 파악이 좀 더 정교하여 이 회사의 한 지방사업소 노동조합원들을 ‘핵심조합주의자’ ‘중도파’ ‘합리주의자’ ‘업무충실파’로 분류해 놓고 있다. ‘조합원 성향 군별분류’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핵심조합주의자를 정치적 조합주의자와 경제적 조합주의자로, 중도파를 군중심리에 편승, 기회주의적 경향으로

나누었다. 또 합리주의자는 옳고 그름의 상황판단을 하는 자들로, 업무 충실파를 조합활동 자체에 불신을 가지고 있음으로 분류해 놓았는데, 각 해당란에 소속부서와 이름이 조합간부와 조합원으로 나뉘어 적혀 있다 (자료 1 참조).

3) 대기업의 전대미문의 다양한 사찰방식

1991년 임금교섭을 앞두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잇따른 구속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대우자동차노동조합에 대한 사찰행위는 4월 9일 오전 전날의 노동조합 침탈에 격분한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정문경비실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일단의 서류들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이 서류에는 노동조합사무실에 남아 있는 조합원의 수가 2~3분 단위로 파악되고 있음을 물론 상집회의의 참가자수 및 그 결과까지 정확히 파악되어 있었다.

사찰서류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상황 내용이란 제목으로 정리되어 1990년 9월 20일부터 최근까지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된 하루하루의 상황이 세밀하게 분석되어 있었다. 한 예로,

1990년 9월 30일 17시 30분 현재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운영위원 26명 집회, 19시 50분 본관 현관으로 이동, 사장실 진입시도했으나 실패 후 연좌농성 돌입(경비원이 제지)

1991년 3월 19일 08시 현재, 대의원 1명 나가고 10명 취침중(현재 15명)

등 노동조합의 상황이 현재 인원까지 파악하여 몇분 단위로 꼼꼼히 적혀 있고, 노동조합은 물론 주택조합 농성상황(1990. 10. 13), 4/4분기 노사협의 상황 등 사내의 조그마한 움직임까지도 속속 파악, 기록되어 있었다.

다른 하나는 '해고자 인적사항, 시간할애 대상자 명단'이라는 것으로 이것은 주요 인물에 대한 기초자료였다. 이 '해고자 인적사항'에는 16명의 해고자의 인적사항이 사진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고 '시간할애 대상

자' 명부에는 신임집행부의 상집간부 27명을 비롯 총 107명의 조합원들의 성명과 소속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또 상황현황에는 노동조합간부들의 회의내용을 요약한 자료가 따로 딸려 있어 회사 쪽이 일상적 감시활동 외에 도청 등의 수단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았다.

또 시간대별로 동향을 감시한 결과를 토대로 조합원들이 제일 적은 시간인 5시 40분대를 파악해 노동조합사무실에 경찰투입을 한 것으로 보아도 이것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게다가 작성자인 청원경찰들은 1991년 3월 18일 한밤중에 조합사무실을 무단 침입해 당직중인 간부들의 신원을 파악했고, 19일에는 조직부장이 정문에 나타나자 대기중이던 형사에게 연락하여 연행하는 데 배려를 아끼지 않는 준경찰적인 활동을 해왔다. 또 수석부위원장 연행 때도 검찰차로 추정되는 차량이 먼저 들어와 경비실에서 얘기를 주고받은 직후 경찰이 투입된 것을 보아도 청원경찰의 역할과 상황일지의 용도를 알 수 있다.

울산 현대중공업의 경우도 회사 경비대원들을 노동조합간부와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사찰에 적극 활용해 왔다.

이 사실은 10월 29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전 현대그룹 노동조합총연합 사무차장 오종쇄씨의 집시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온 현대중공업 총무부 소속 김석영(27세), 김우석(30세), 양익근(25세)씨 등 경비대원 3명의 법정진술을 통해 알려졌다.

양씨는 변호인과 피고인 쪽의 반대신문에서 오씨 등 회사 쪽이 지정하는 특정 노동조합간부와 해고자들에 대해 2인 1조 2교대의 전담미행조를 편성해 24시간 동안 동태를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또 두 김씨는 집회 및 시위 때는 "밤 10시경에도 시위대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오씨의 얼굴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을 만큼" 1~2미터 근처에서 감시대상자의 활동을 면밀하게 파악해 왔다고 말하였다. 한편 노동조합측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회사 경비대원들의 전체수는 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절반 정도만이 본래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탄압을 항의하는 노동자들

4,50여 명의 노동조합간부와 해고자들에 대한 미행·감시 및 사찰업무를 맡고 있어 이들의 지나친 미행·감시로 인해 가족과 이웃사람들이 불안에 떨 정도로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관계자도 이에 대해 “해고자들의 노동쟁의 개입을 막기 위해 이들의 활동을 파악해 보고 하도록 지시했다”며 사실의 일부를 시인하였다.

노동조합의 설립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유명한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조선 창원공장에서는 1991년 6월 7일 위조편지가 발견되었다. 내용인즉 거제법외노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정모씨가 창원에서 민주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준비하고 있던 김모씨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와 함께 격려편지를 등기로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모씨가 받은 편지에는 “아직 시기가 이른 것 같다.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으니 몸조심하고 당분간 활동을 중지하자”라는 등의 내용이 실려 있어 이를 이상히 여겨 정모씨에게 확인해보니 보낸 내용은 없어진 채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고 글씨체도 걸봉과 달랐다

고 한다. 걸봉을 뜯어 필적을 위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창원공장의 노동자들은 “등기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를 할 수 있었다”며 삼성재벌의 행정장악 능력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한편 7월 10일 오후 4시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탄 2지구 35블록 유재현(32세, 삼성전자 해고자 복직실천위원)씨가 자신의 집 전화가 밖으로 전화선이 연결돼 도청되고 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었다. 전화도청선은 집 옥상에 있는 전화단자함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매탄 2지구 상가 겸 주택건물 1층방에 설치된 2대의 녹음기에 이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인근 대일부동산 주인 김혜진씨에 의하면 “이 방은 1주일 전쯤 30대와 40대로 보이는 남자 2명이 회사서류 정리를 하기 위해 한 달 반 동안 빌리겠다며 한 달분 월세 25만 원을 선불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방안에는 텔레비전 1대와 전화공사원 작업복 2벌, 빈 테이프 10개, 녹음하다만 카세트테이프 2개가 발견되어 이들이 전화공사를 위장하여 전화선을 설치한 뒤 유씨 집 전화를 도청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 사실을 조사하기는커녕, 도청 피해노동자를 갑자기 연행,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였다. 이는 전화도청이 경찰에 신고되어 말썽을 빚자 회사쪽이 이를 보복, 무마하기 위한 사후조치로 심씨를 고소했고 이에 대해 경찰이 편파적 수사를 한 것이다.

4) 납치·폭행

1991년에 일어난 납치·폭행의 두드러진 점은 사용자가 더욱 대담하게, 전근대적인 탄압도 개의치 않고 노동자의 탄압에 폭행 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찰 등 공권력이 더욱 편파적으로 사용주의 탄압을 눈감아주거나 방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 회사 이전 항의 조합원을 차로 밀어

경기도 구리시 이원산업(대표 정성익)은 지난 9월 5일 회사 이전에 항의하던 노동조합원들과 이를 지원하던 원진레이온노동조합 간부를 이 회

사 관리자들과 같은 건물 조선무역의 관리자들이 납치하려다 노동조합원들이 차를 막자 그대로 차로 밀어버렸다. 이전에 따른 고용승계문제로 인해 노동조합이 지난 8월 31일 쟁의행위를 신고하고 한 개 라인 사람들 이 동시 지각을 하자 회사는 파업으로 판단, 9월 5일 노동조합 위원장, 사무장을 강제로 쫓아내고 조합사무실을 봇박은 채 폐쇄시켰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그대로 차로 밀어버린 것이다.

(2) 가스총 쏘며 폭행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은봉리 산 53 (주)동명철강(대표 박순영)에서는 3월 7일 회사대표 동생인 자재과 주임 박순철(32세)씨와 하청회사인 남양산업 대표 홍순봉(35세)씨가 회사 마당에서 노동조합사무실 폐쇄에 항의하던 노동조합 총무부장 원광희(48세)씨를 폭행하고 얼굴에 가스총을 쏘아 실신시켰으며 노동조합원 김규태(42세)씨가 직원에게 맞아 머리를 찢기는 등 부상을 당해 이천 읍내 서울외과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주)동명철강 자재과 주임 박순철씨는 “홍씨가 노동조합원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것 같아 이를 말리려고 가스총을 쏘았다”고 말하였다.

한편 사건 직후 가남면 지서장은 “가스총을 쏜 것은 정당방위”라고 하면서 사용자의 폭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회사측은 오히려 “법적으로 하겠다” “공수부대원을 풀어 혼내주겠다”며 위협적 자세로 일관하였다.

(3) 팬티만 입힌 채 무릎 끌려 집단폭행

6월 26일 경기도 부천시 중구 도당동 (주)합성(대표 이광엽)에서는 김병규씨 등 노동조합원 7명이 회사쪽 직원 40여 명으로부터 집단구타당한 뒤 이 중 김씨 등 2명은 봉고차에 실려 회사안 기술부 사무실로 끌려가 노동조합탈퇴서와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거부하자 구사대원들은 김씨 등을 팬티만 입힌 채 무릎을 끌끌게 하고 구둣발 등으로 집단구타하였다. 김씨는 온 몸에 피멍이 드는 등 전치 20일의 상처를 입고 인근 성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였다. 또 같은 시간에 회

사기숙사에서 홍보물을 나누어주던 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석태(28세)씨 등 3명도 회사안으로 끌려가 김씨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는 등 집단폭행을 당한 뒤 사직서와 노동조합탈퇴서를 쓰고 5시간 만에 풀려나기도 하였다.

(4) 구사대, 가스총 지니고 폭행

5월 17일 구속 노동조합간부 석방과 임금협정 체결 등을 요구하며 4일째 파업중이던 경남 양산의 대우정밀(대표 권오준)에서는 관리직 사원이 쇠파이프와 가스총을 지닌 이 회사 축구부원 15명과 노무팀 등 20여 명을 봉고차와 승용차에 태우고 데려와 노동조합간부들을 포위한 뒤 40센티미터 가량의 쇠파이프로 노동조합 기획차장 박종석(28세), 문화부장 박종수(23세)씨 등 2명을 때려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입혔다. 이 소식을 들은 노동조합원 30여 명이 연락을 받고 와 이들과 정면 충돌, 이 과정에서 생산 3부장 직무대리 안득봉씨가 중상을 입는 등 양쪽에서 10여 명이 상처를 입는 불상사가 빚어졌다.

(5) 신문사 위원장도 납치

현재 사실상 노동조합이 해체된 『부산매일신문』에서는 신문사임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격의 탄압이 저질러졌다. 심지어 5월 22일에는 이 회사 광고국, 판매국 직원 5명이 노동조합 위원장 유동현(32세)씨를 납치해 끌고다니며 노동조합해체 신고서용 도장을 빼앗는가 하면 일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동조합해체 각서를 강요하기도 하였다. 이들 직원 5명은 이날 오전 1시경 회사 편집국에서 위원장 유씨를 끌고나와 회사 근처와 부산진구 서면일대로 데리고 다니면서 협박을 하여 동래구청에 노동조합해체 신고를 하기 위해 도장을 빼앗아갔다. 또 이 신문사 보급소장 등 30여 명은 오전 2시께 노동조합원들을 회사 회의실에 강제로 들어가게 한 뒤 그 중의 1명이 송곳으로 소파를 내리찍는 등 위협을 가하며 노동조합해체를 강요, 협박에 못 이긴 조합원 18명이 노동조합해체 각서를 써주기도 하였다.